

제규칙 제안서

1. 규정명:

- 가. 「원격수업기반 학적자료 관리 규칙」
- 나. 「원격수업기반 콘텐츠 운영·관리 규칙」

2. 정비 사유

- 가.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문 현행화
- 나. 이론 및 실습(실기)과목의 시수를 반영한 “콘텐츠 분량”으로 개정

3. 주요내용

- 가. 제3조(문서의 종류 및 보존기간)의 조문내용이 별표와 중복되어 해당 조문에서 삭제하고, 학적관련 자료 등을 학습관리시스템 DB로 저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
- 나. 이론 및 실습(실기) 과목을 포괄하는 “학점당” 기준으로 콘텐츠 분량 개정

4. 토의과제

해당사항 없음

5. 참고사항

- 가. 신규조문 대비표
- 나. 「원격수업기반 학적자료 관리 규칙」, 「원격수업기반 콘텐츠 운영·관리 규칙」 개정 전문 1부

제출일: 2026. 04. 10.

대학원기획처장 귀하